

---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2020.07.

# 제 출 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2020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평가자 : 이매니지먼트(주)
2. 평가기간 : 2020. 6. 1. ~ 7. 27

2020. 7. 29

이매니지먼트(주) 대표이사 나상익

# 목 차

I.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1.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	1
2. 목적과 필요성 .....	2
3.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	3
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인권영향평가 .....	3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	4
4.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	5
가. 사전 정보 .....	5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6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8
I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10
1. 평가 종합 .....	10
가. 총평 .....	10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11
2. 분야별 평가 .....	13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13
나. 고용상 비차별 .....	14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5
라. 강제노동의 금지 .....	16
마. 아동노동의 금지 .....	17
바. 산업안전 보장 .....	17

사.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18
아.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19
자. 환경권 보장 .....	20
차. 학생 인권보호 .....	21
III.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22
1. 평가 종합 .....	22
가. 총평 .....	22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22
2. 분야별 평가 .....	24
가.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	24
나. 인증평가 계획 공고 및 설명회 .....	25
다. 인증평가 .....	25
IV. KOREATECH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제언 .....	27
1. 전략체계 .....	27
2. 2020-2021 중점 추진 과제 .....	28
V.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제언 .....	29
1. 구제절차 제도 마련 .....	29
2. 구제제도 공개 및 신고접수창구 마련 .....	32

별첨. 평가 세부내용

## 1.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 가. 개념 이해

구분	개념
인권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amp; Human Rights</li> <li>•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지지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해,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대학 경영 활동</li> </ul>
인권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ystem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amp; Human Rights</li> <li>•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li> </ul>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e Diligence</li> <li>• 대학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li> <li>•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대학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li> </ul>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li> <li>•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li> <li>•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li> </ul>

### 나. 특징 및 주요 요소

구분	개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li> <li>•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li> <li>•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li> </ul>
주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li> <li>• 평등과 비차별 원칙</li> <li>• 접근성과 투명성</li> <li>•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li> <li>•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li> <li>•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대학의 참여)</li> <li>•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li> </ul>

## 2. 목적과 필요성

### 가. 대학 인권리스크 사전관리 & 실제적·잠재적·부정적인 인권영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인권취약 분야 파악</li> <li>•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계획 수립의 기초 정보 제공</li> <li>• 인권취약 지역 또는 이해관계자 인권증진 프로젝트 개발 기회 제공</li> </ul>
--

### 나.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및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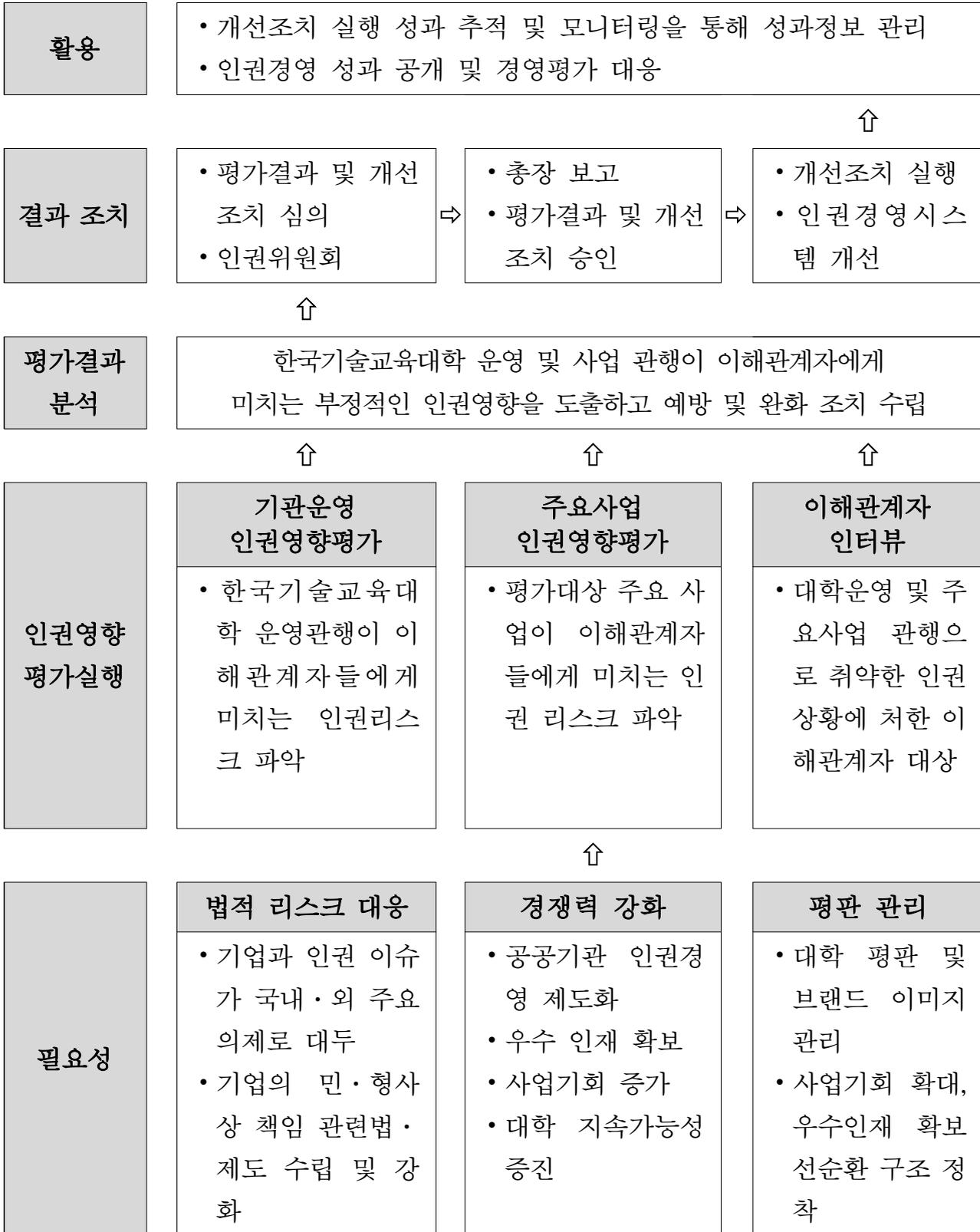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 인격권 및 학습권 침해</li> <li>• 단독방 익명 게시판의 성희롱, 관련 콘텐츠 유포, 혐오발언 등</li> <li>•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li> <li>• 기타 대학 운영과 사업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잠재</li> </ul>
---

### 다. 리스크 및 압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명성, 재정리스크, 법적 리스크, 지속가능성</li> <li>•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언론매체, 지역사회 등</li> </ul>
---

### 3.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 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 & 인권영향평가



##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p>1단계 준비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외부전문 기관+대학TF 참여)</li> <li>• 인권영향평가 범위 설정(기관운영+주요사업 1개)</li> <li>• 2020 코리아텍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li> <li>• 2020 코리아텍 인권영향평가 착수보고</li> </ul>
<p>2단계 사전조사 (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li> <li>• 국내외 기준에 따라 대학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검토 및 보완·개선 방향 도출</li> <li>• 코리아텍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작</li> <li>• 평가대상 사업 선정(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평가사업)</li> <li>•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기관운영·주요사업)</li> </ul>
<p>3단계 착수 (6월~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평가(기관운영·주요사업, 내부 문서 및 규정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li> <li>• 대학 TF워크숍(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교육, 1차 평가결과 및 대학TF 피드백 방법 안내, 이해관계자 인터뷰)</li> <li>• 대학 TF 및 주요사업 시행 부서에서 1차 평가 결과 검토 및 피드백 제공</li> <li>• 피드백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평가 보완</li> <li>•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li> </ul>
<p>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li> <li>•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li> <li>•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li> </ul>
<p>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li> <li>• 실행 성과 결과 보고</li> <li>•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li> </ul>

## 4.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 가. 사전 정보

#### 가-1. 용어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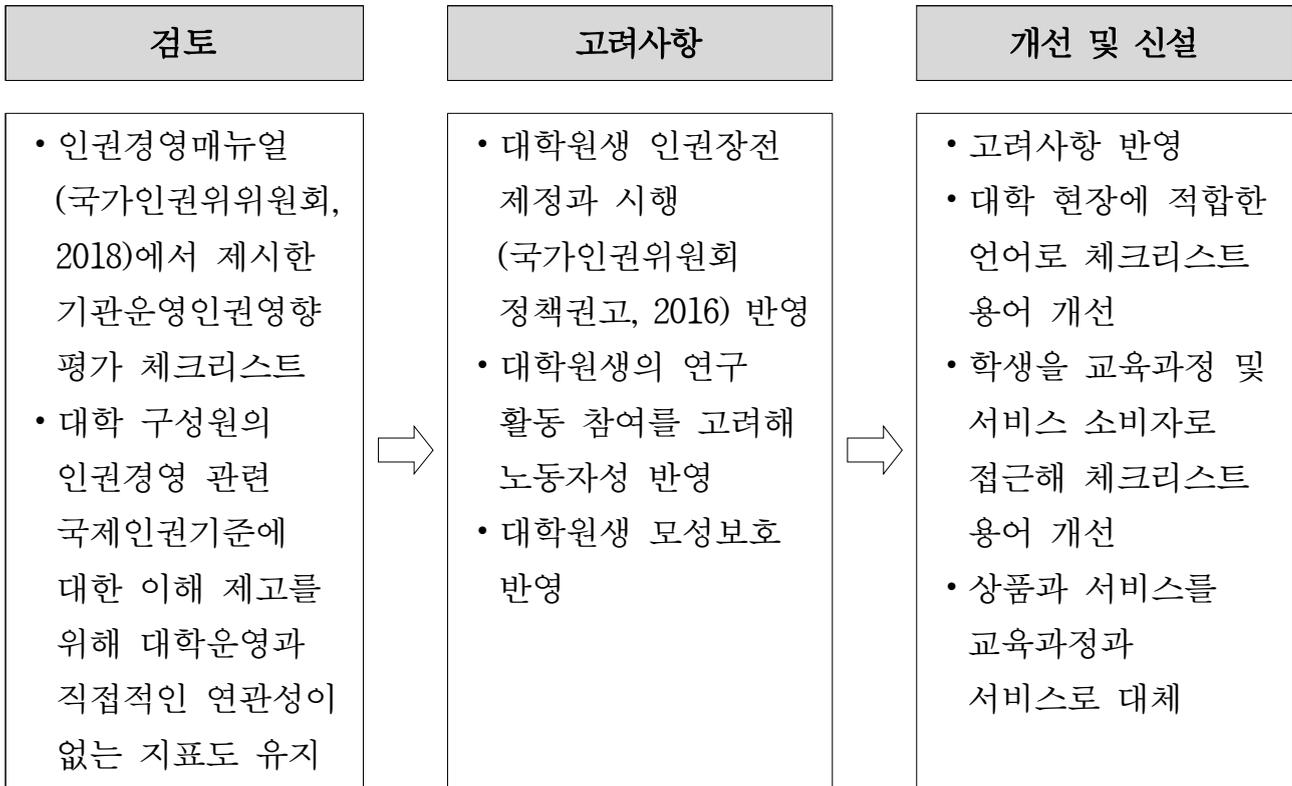
분야	항목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이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li> <li>• 대학이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준중해야) 하는 인권 목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 실천 요소</li> <li>• 대학이 필수 인권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실천 요소의 실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li> </ul>

#### 가-2. 답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예(Yes)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 필요 (Further attention required)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계획 수립 필요)
아니오(N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향후 추진 계획 필요)
정보 없음 (No Inf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and Unknown)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대학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e.g. 외국인 근로자 처우 - 외국인 근로자 없음. 노조 부재 시 대안조치 - 노조 있음 등)

##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나-1. 체크리스트 도출



### 나-2.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30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외국인노동자 비차별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제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13
		산하기관,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8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학생 인권 보호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6
		수업 및 교육 내용 개선 조치	
		학생 사생활 보호	
		인권침해 예방 조치	
합계	10	34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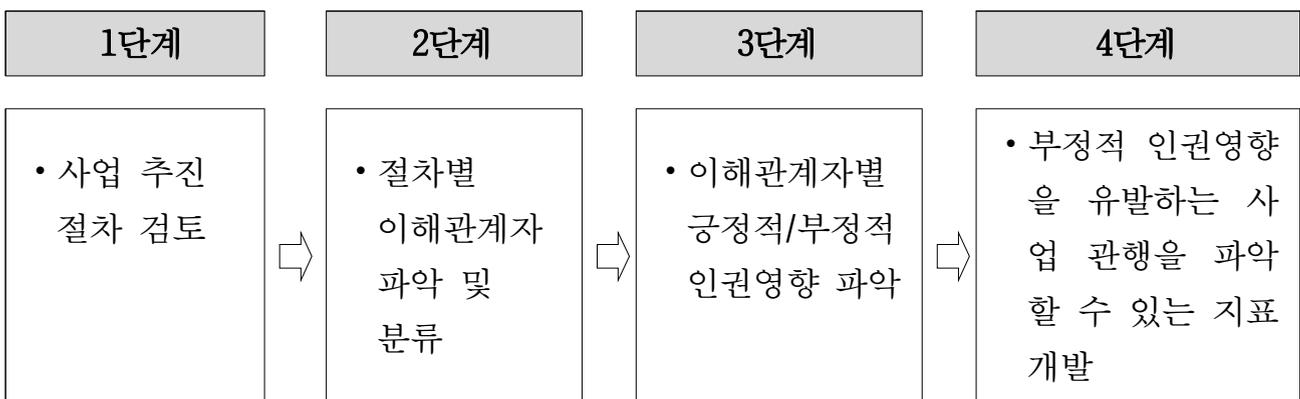
##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다-1. 선정기준

구분	세부 내용		적합도
인권 영향의 파급성	심각성	• 부정적 인권영향으로 인한 피해 정도	●
	회복 가능성	• 보상 등 구제를 통한 피해 원상회복 가능성 정도	●
	범위	• 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이해관계자 수 또는 지역적 범위	◐
대표성	목적 사업	• 대학 설립 취지 및 미션과의 직접적인 관련 정도 • 중점 추진사업	●
지역 사회 연계성	지역 현안	• 지역사회 의 현안 또는 이슈와 연계된 사업	●
독점성	승인/허가, 인증/자격 부여	•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이나 허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

주) 적합도 상(●), 중(◐), 하(○)

### 다-2. 체크리스트 도출



### 다-3.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제도 구축	19
		공정성·독립성	
		신청기관 권리보호	
		훈련생 권리보호	
		민원담당자 권리보호	
2	인증평가 계획 공고 및 설명회	접근성 보장	6
		정보제공	
3	인증평가	평가 절차의 인권 고려	1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개	
합계	3	10	38

## 1. 평가 종합

### 가. 총평

구분	세부내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기관운영 전반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이행 원칙(UNGPs)의 규범적 근거인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li> <li>• 다만, 대학원생 인권 현안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설 또는 기존 정책 보완을 제안함</li> <li>• 또한 기존 규정 및 제도에서 부정적 인권영향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인권정책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발생 시 이를 다루기 위한 추진 기구, 전담 조직,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기구를 구축·운영 중에 있어, 대학의 인권존중 및 구제절차 제공 책임이행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li> <li>• 다만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기구 구성원 개선 및 확대가 요구됨</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인권 관련 프로그램과 이벤트·교육 등 구성원들의 참여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li>• 더불어 정책 및 제도의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관행 또는 문화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li> </ul>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162개 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 ‘해당 없</li> </ul>

이슈	<p>음’ 제외)는 예(81.6%), 보완 필요(15.5%), 아니오(2%), 정보 없음(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1.2점으로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학생 인권보호 분야가 지표를 모두 충족한 반면,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강제노동의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는 일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li> <li>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는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지표 충족률이 저조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영향권 내로 인권존중 책임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li> <li>더불어,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활동 과정에서 교수에 의한 강제노동·인격권 침해, 괴롭힘 관행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조사가 필요해 보임(2020년 코리아텍 인권실태조사 참조)</li> </ul>
----	--

####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2	7		1	
2	고용상의 비차별	16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2
4	강제 노동의 금지	10	2	1		
5	아동노동의 금지	5				9
6	산업안전 보장	18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5	1		2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6	4			
9	환경권 보장	12	5	1		
10	학생 인권 보호	16				
합 계		121	23	3	1	14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89.7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86.3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3.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8.6	
9	환경권 보장	83.7	
10	학생 인권 보호	100	
평 점		91.2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times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 2. 분야별 평가

###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가-1. 개선의 여지

구분	세부내용
정책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 또는 학생인권선언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 인권현안 반영 필요(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6 참고)</li> <li>• 인권교육 적용 범위 확대(이해관계자-부속기관, 이슈-인권정책 및 이행규칙)</li> </ul>
제도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원회 구성을 노동조합 및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li> <li>• 인권침해구제기구(인권심의위원회/성폭력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완</li> <li>• &lt;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gt;내 구제기구 학생위원의 심의 참여 제한 규정 개선 제안</li> <li>• 구제기구 위원 및 전담조직 실무자 대상 구제절차 교육 및 훈련 제공 제안(전문가 초청 및 내부 워크숍)</li> </ul>
인권경영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크스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시행</li> <li>• 개선조치 이행 성과를 추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공개</li> </ul>

#### 가-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존중정책 선언	3	3		1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 성과	3	4			
5	구제절차 마련	6				
합 계		22	7		1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인권존중정책 선언	71.4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4	인권경영 성과	77.1	
5	구제절차 마련	100	
평 점		89.7	

## 나. 고용상의 비차별

### 나-1. 개선의 여지

-
---

### 나-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용상 비차별	5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2				1
합 계		16				1

No.	분 야	점수	비고
1	고용상 비차별	1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00	
평 점		100	

##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다-1. 개선의 여지

-
---

### 다-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2
합 계		14				2

No.	분 야	점수	비고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	
평 점		100	

## 라. 강제노동의 금지

### 라-1. 개선의 여지

구분	세부내용
강제노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 학업 및 연구 활동 과정에서 교수에 의한 강제노동 및 인격권 침해, 괴롭힘 이슈에 대한 전수조사 제안(2020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참고)</li> <li>• 대학원생 강제노동 금지 및 인격권 침해 예방과 관련해 교원 대상 교육과 지침 제공</li> </ul>
유관기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기관 외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이슈에 대한 감사 또는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관련성과 관리 필요</li> </ul>

### 라-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강제노동의 금지	8	1	1		
2	산하기관,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1			
합 계		10	2	1		

No.	분야	점수	비고
1	강제노동의 금지	86	
2	산하기관,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86.7	
평 점		86.3	

## 마. 아동노동의 금지

### 마-1. 개선의 여지

-
---

### 마-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 고용 금지	5				1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8
합 계		5				9

No.	분 야	점수	비고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 점		100	

## 바. 산업안전 보장

### 바-1. 개선의 여지

-
---

### 바-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작업장 안전	5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5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5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합 계		18				

No.	분 야	점수	비고
1	작업장 안전	1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평 점		100	

## 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사-1. 개선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공급망 인권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현장 및 이행규칙에 대한 부속기관 교육 및 소통 필요</li> <li>• 제품과 서비스, 용역 조달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약 사무처리지침 개선&lt;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 참고&gt;</li> </ul>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공급망 참여 고려</li> <li>• 공급망 계약 및 갱신 과정에서 인권 이슈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약 사무처리지침 개선</li> </ul>

### 사-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2	모니터링 실시		1	1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2
합 계		2	5	1		2

No.	분 야	점수	비고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0	
2	모니터링 실시	30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평 점		63.3	

## 아.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아-1. 개선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주민인권 존중· 보호	• 학교 법인의 토지 매입 업무 관련 규정 마련 제안

### 아-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3	4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합 계		6	4			

No.	분 야	점수	비고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7.1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평 점		88.6	

## 자. 환경권 보장

### 자-1. 개선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환경경영 체제 수립	• 환경성과 목표 관리제 시행과 환경교육 정기적 시행 필요
환경정보 공개	• 인권경영현장 및 이행규칙에 명시된 환경권 보장 정책을 구체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및 소통

### 자-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	3	1		
2	환경정보의 공개	2	1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1			
4	비상계획 수립	5				
합 계		12	5	1		

No.	분 야	점수	비고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6	

2	환경정보의 공개	86.7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2	
4	비상계획 수립	100	
평 점		83.7	

## 차. 학생 인권보호

### 차-1. 개선의 여지

-
---

### 차-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5				
2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2				
3	학생 사생활 보호	6				
4	인권침해 예방조치	3				
합 계		16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00	
2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100	
3	학생 사생활 보호	100	
4	인권침해 예방조치	100	
평 점		100	

### Ⅲ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평가 사업]

## 1. 평가 종합

### 가. 총평

구분	세부내용
인권실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인권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갖추고 있음</li> <li>• 심사평가위원의 위촉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 이해상충 방지로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li> <li>• 다만, 외부 평가수행자의 사전준비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li> </ul>
인증평가 계획공고 /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계획 공고문 및 설명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권준수 이슈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li> <li>• 더불어, 평가편람을 평가 귀속년도 이후에 확정·배포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혼란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예방 필요</li> </ul>
인증평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평가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li> <li>• 평가절차에 피평가 기관의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의절차 심의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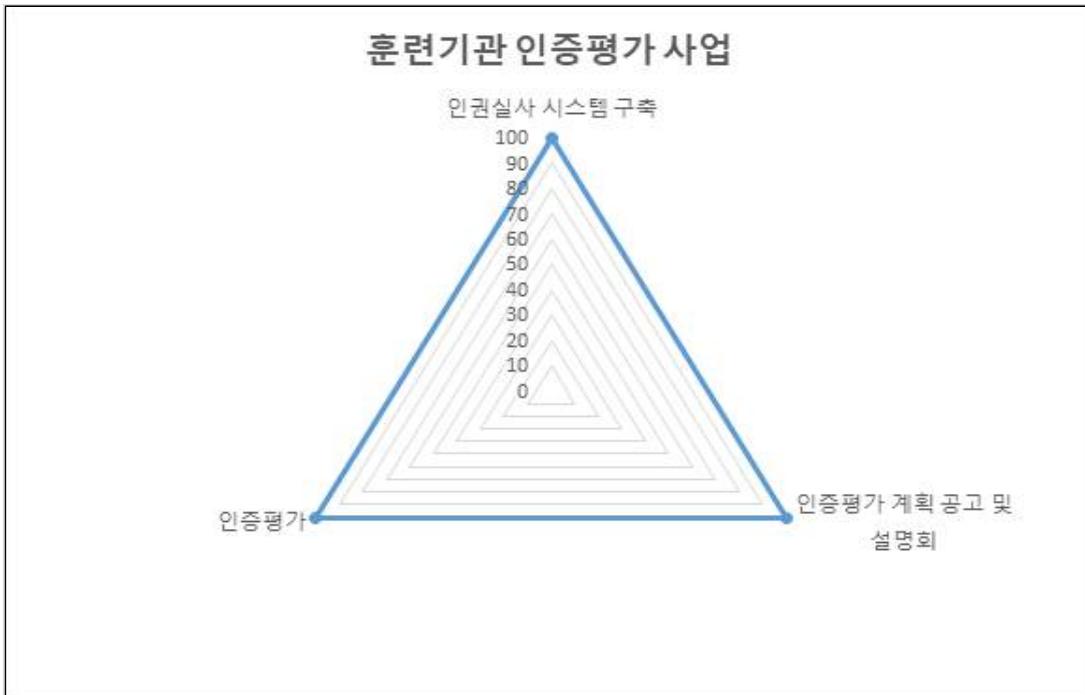
## 나. 체크리스트 종합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19			
2	인증평가 계획 공고 및 설명회	6			
3	인증평가	13			
합 계		38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100	
2	인증평가 계획 공고 및 설명회	100	
3	인증평가	100	
평 점		100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 2. 분야별 평가

### 가.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 가-1. 개선의 여지

-
---

#### 가-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제도 구축	6				
2	공정성·독립성	4				
3	신청기관 권리보호	5				
4	훈련생 권리보호	2				
5	민원담당자 권리보호	2				
합 계		19				

No.	분 야	점수	비고
1	제도 구축	100	
2	공정성·독립성	100	
3	신청기관 권리보호	100	
4	훈련생 권리보호	100	
5	민원담당자 권리보호	100	
평 점		100	

## 나. 인증평가 계획 공고 및 설명회

### 나-1. 개선의 여지

-
---

### 나-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접근성 보장	3				
2	정보제공	3				
합 계		6				

No.	분 야	점수	비고
1	접근성 보장	100	
2	정보제공	100	
평 점		100	

## 다. 인증평가

### 다-1. 개선의 여지

-
---

### 다-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평가 절차의 인권 고려	8				
2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심의	4				

3	결과 공개	1				
합 계		13				

No.	분 야	점수	비고
1	평가 절차의 인권 고려	100	
2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심의	100	
3	결과 공개	100	
평 점		100	

## 1. 전략체계

인권경영 비전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행복 코리아텍’		
추진단계	인권경영 정착기 (2020-2021)	인권경영 도약기 (2022-2023)	인권경영 선도기 (2024- )
추진목표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제도 안정화	인권경영의 지속적 발전 도모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관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규정 정비</li> <li>• 제도 보완</li> <li>• 관리자 인권교육 강화</li> <li>•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정례화</li> <li>• 인권침해 구제절차 실효성 제고</li> <li>• 인권경영 실무능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규범 및 제도 선진화</li> <li>• 공급망 인권준중 책임 이행 일상화</li> <li>• 인권침해 구제절차 체계화 및 내실화</li> <li>• 지역사회로 인권 문화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및 대학 인권 클러스터 선도</li> <li>• 인권경영 모범 사례 전파</li> </ul>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이슈 파악	분석 및 진단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정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운영</li> <li>•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li> <li>• 인권침해신고 이슈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규정 및 제도, 사업) 반영</li> <li>• 인권실태조사/인권영향평가 지표 반영</li> <li>• 교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콘텐츠 반영</li> </ul>

## 2. 2020-2021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세부내용
정책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과 교내 확산</li> <li>• 인권침해구제기구(인권심의위원회/성폭력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완</li> <li>• &lt;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gt;내 구제기구 학생위원의 심의 참여 제한 규정 개선</li> <li>• 공급망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계약규정 보완</li> </ul>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 학업 및 연구 활동 과정에서 교수에 의한 강제노동 및 인격권 침해, 괴롭힘 이슈에 대한 전수조사(2020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검토 후, 인권침해가 실재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li> <li>• 2020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크스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조치 성과를 추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공개</li> </ul>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 강제노동 금지 및 인격권 침해 예방과 관련해 교원 대상 교육과 지침 제공</li> <li>• 구제기구 위원 및 전담조직 실무자 대상 구제절차 교육 및 훈련 제공(전문가 초청 및 내부 워크숍)</li> <li>• 정책 및 제도의 모니터링을 점진적 확대·정례화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관행 또는 문화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관행 정착</li> </ul>

## 1. 구제절차 제도 마련

- (제도 구축) 국내외 사례 및 유관기관 구제절차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인권경영 이행지침의 내부조항(제6장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제정으로 제도화
  -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운영기구로서 인권침해 전담기구(인권보호센터) 별도 설치
  -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 구제절차의 효용성,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부진분야 발굴/개선
  
- (운영 프로세스)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심의 의결기구로 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수립
  - (신고 접수) 인권보호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
    - ※인권구제책임관의 각하 또는 조사여부 판단
  - (사건조사 및 합의권고) 인권구제책임관이 당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조사 및 진술서, 자료제출 등 요구, 필요 시 면담조사 수행
    -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음(강제적인 합의 권고가 아님)
  - (구제절차) 신고내용을 토대로 인권구제책임관이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 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 ①구제위원회 개최 :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사건조사 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②구제위원회 심의 : 사실관계와의 증거 등을 토대로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심의 결정)
- ③구제위원회 의결 :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합의, 이송 등을 결정
  - 가.조정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
  - 나.권고 :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관 내부 징계, 제도개선 권고,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관 외부의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법률구조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안내
  - 다.기각 :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
- ④처리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통보를 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해당 기간(14일) 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이내 재심의

- (기관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 소속 기관의 인사/경영 관련 부서에 의결사항을 통보
- (당사자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게 구제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결과에 불복 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및 안내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당사자 송달

○ (구제절차 운영방안)

- (신고의 각하)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피해자의 의사, 기한의 경과 등의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	
①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⑤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신고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⑧ 위원회가 기각한 신고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⑨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조정) 구제위원회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조정 실시 가능

① 조정절차 시작	② 당사자 조정 실시	③ 조정 합의	④ 조정 성립
당사자 신청, 구제위원회 직권	당사자 합의	심의결정서 작성	이의제기 가능

- (권고) 위원회는 고발 및 고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 또는 징계, 제도개선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 권고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진술 :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가능</li> </ul>
--

- (기각) 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가능

- 신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추가조사) 위원회는 조사 미비/진술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재청취, 당사자 출석요구, 자료 제출요구 등 가능
- (타 기관 연계 구제절차 제공) 신고인이 구제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복 시 조사, 증거 확보, 권리구제를 위해 구제위원회 재심의를 가능하며, 필요 시 외부 타 절차와 연계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타 기관의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인권침해 사실의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함

## 2. 구제제도 공개 및 신고접수창구 마련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구제제도 홍보
- 신고 접수창구 마련으로 구제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상시 구제신청 시스템 운영\*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신고 접수채널의 효율적 활용



○ 인권침해 신고 [별치 제3호]

- (부서방문) 인권경영부서 방문, 인권침해 신고서 제출
- (우편) 인권경영부서 인권구제책임관/인권경영담당자
- (전화) 전화를 통한 신고내용 상담(00-0000-0000)
- (팩스) 서식 팩스송부(00-0000-0000), 인권경영담당자와 사전통화 필수
- (이메일) 인권구제책임관/인권경영담당자 앞 이메일 송부

○ 조사 및 보고

- (주관부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등재, 기관장 및 인권경영책임관 보고
- (조사) 인권구제책임관 사건조사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등에 대한 서면 및 면담조사 실시
- (보고) 조사결과[별지 제5호] 기관장 및 인권경영책임관 보고, 구제위 상정

※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고발 등이 있을 시 조사가 종결됨을 신고인에게 안내, 신고인이 외부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는 즉시 내부 구제절차는 종결되며, 최종결과는 외부 조사결과 중 상위법을 따름을 안내

○ 구제절차

- 사건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조정, 권고, 기각, 이송 등 결정[별지 제6호]

구 분		내 용
조정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
권고	비사법적	[내부] 징계 권고/제도 개선
	사법적	[외부] 진정, 고소, 고발, 법률구조요청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기각		인권침해 사실 없음

## ○ 의결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의결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 의결 결과를 받은 기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본 인권보호센터로 서면 통보해야 함
-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시, 구제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내 재심의

## ○ 사건 종결

- 최종 결과 보고(기관장, 인권경영책임관)
  -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중 징계 관련 조항에 따름
- 신고인 최종 서면통보